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2. 김대식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 2024. 7.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8.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8)

상정 ·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

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을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을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1. 총괄적 검토

개정안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변경 인가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지분을 (10%)을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완화하며,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상호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사유를 변경하여 현물출자 비율을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25조¹⁾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지칭함.

이는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여 투자와 고용을 유발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와 경제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개정 당시의 규정이 과도하여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제가 완화되었음.

구분	2007년 개정안	현행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	산학협력단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
자회사 의무주식보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구분	2007년 개정안	현행
의무주식보유 유예기간	1년	1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제 조항으로 인해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에 실패하는 사례²⁾³⁾가 발생함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 제정안이 발의 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술지주회사와 유사한 제도로는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있으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유사제도 비교 >

구분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 사
주무부처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근거법률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 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 조치법
목적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 창업촉진	기술사업화, 창업촉진
설립방식	인가	등록	등록
설립 주체	산학협력단 등	공공연구기관 (대학 포함)	대학(산단 포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 (서울대) 유망 AI스타트업에 1억 원 투자, 자회사 지분율을 지킬 수 없어 AI스타트업 지분 모두 처분, 이후 해당 자회사는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에 약2,300억 원에 매각

3) (연세대) 자회사인 ○○○가 외부투자, R&D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크게 성장시켜 코스닥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자회사 지분율 규정을 지킬 수 없어 지분을 모두 매각

구분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 사
설립요 건	회사종류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임원결격	있음	있음	있음
	시설기준	있음	있음	있음
	보유기술 제한	별도규정 없음	녹색기술, 첨단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화	별도규정 없음
	설립주체 지분보유 율	자본금의 30%초과하여 현물출자, 발행주식의 50% 초과	발행주식의 50% 초과	발행주식의 10% 이상 단, 대학이 현금만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기술을 이전해야 함
자회사 (출자회 사) 설립요 건	주주총회	보통결의	보통결의	특별결의(단, 대학은 자회사 설립불가)
	회사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지분 보유율	의결권있는 주식의 10% 이상	2년간 출자회사 주식 20% 이상 보유* (예외사항** 발생 시 면제)	자회사 관련 요건 없음
인가(등록) 취소 사유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경우, 지주회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한 경우, 이익배당 사용 제한 위 반	등록요건 불충족 및 유 사수신행위	자회사 채무보증, 유 사수신행위

1) 기술지주회사의 변경 인가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제6항)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설립기관 추가·변경 등 권리
관계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근
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

현행	개정안
· 운영) ① (생략) <신설>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⑥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설립기관 추가·변경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에는 기술지주회사의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인허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그로 인해 현재까지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기술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출자를 통해 주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있음.⁴⁾ 이 같은 경우 설립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상·중세법」 제48조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⁶⁾에 따라 출자를 통해 참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한 대학은 산학협력단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

이를 고려했을 때, 개정안과 같이 변경인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기존 법적 제도의 미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2) 자회사 의무 보유지분율을 설립 시에만 유지(안 제36조의4제 4항)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지분율(10%)을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완화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생략)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 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 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	④ ----- ----- ----- -----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현행	개정안
는 제외한다)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략)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 -----. <단서 삭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산학협력법에서 자회사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함.⁷⁾ 산학협력법에서는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규정하는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자회사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면서,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최대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⁸⁾, 「상법」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⁹⁾ 이를 유추적용했을 때 산학협력법상 자회사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계열회사가 된 경우 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대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것

9)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

의 요건인 “사업내용의 지배”도 보유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개정안은 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로 인하여, 자회사가 성장할수록 대응투자 자금이 필요하여, 외부로부터 자회사 투자를 거절하거나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자회사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 보유지분율을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수백억이 오고 가는 기술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자본금 현황 >

(단위: 백만원)

회사명 (설립연월)	설립시 자본금			2022.12.31. 기준 자본금			추가 출자 금액 (증자금액)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고려대기술지주 (2009.8월)	4,000 (42%)	5,421 (58%)	9,421 (100%)	12,210 (60%)	8,290 (40%)	20,500 (100%)	11,079
서울대기술지주 (2008.10월)	3,000 (43%)	3,943 (57%)	6,943 (100%)	15,270 (76%)	4,732 (24%)	20,002 (100%)	13,059
연세대기술지주 (2011.4월)	2,000 (49%)	2,105 (51%)	4,105 (100%)	10,060 (61%)	6,454 (39%)	16,514 (100%)	12,409
부산연합기술지주 (2015.9월)	100 (42%)	136 (58%)	236 (100%)	10,676 (66%)	5,549 (34%)	16,225 (100%)	15,989
국민대기술지주 (2018.6월)	539 (67%)	261 (33%)	800 (100%)	11,239 (94%)	767 (6%)	12,006 (100%)	11,206
한양대기술지주 (2008.7월)	1,500 (42%)	2,091 (58%)	3,591 (100%)	6,648 (64%)	3,669 (36%)	10,317 (100%)	6,726
부산대기술지주 (2010.2월)	470 (31%)	1,030 (69%)	1,500 (100%)	2,405 (33%)	4,788 (67%)	7,193 (100%)	5,693
전북연합기술지주 (2011.4월)	290 (34%)	567 (66%)	857 (100%)	4,904 (71%)	2,037 (29%)	6,941 (100%)	6,084

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회사명 (설립연월)	설립시 자본금			2022.12.31. 기준 자본금			추가 출자 금액 (증자금액)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대경공동기술지주 (2014.11월)	230 (70%)	100 (30%)	330 (100%)	4,444 (67%)	2,228 (33%)	6,672 (100%)	6,342
포항공대기술지주 (2012.4월)	700 (65%)	378 (35%)	1,078 (100%)	4,100 (67%)	2,017 (33%)	6,117 (100%)	5,038

※ 2022년말 기준 자본금액 상위 10개사 작성

< 부산대 및 연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지분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술 지주 회사	자회사 현황		설립시 기술지주회사 출자금				2022.12월 기준 기술지주 출자(투자)금			
	회사명	설립 자본 금	현 금	현 물	계	지분 율	현금	현물	계	지분 율
부산대 기술지 주	(주)부산대물	50	50	-	50	100%	650	-	650	100%
	(주)에스엔비아	80	30	-	30	37.5%	42	226	268	11%
	(주)효원파워 텍	166	10	156	166	100%	10	156	166	0.8%
	(주)피앤유드론	78	-	58	58	74.4%	-	58	58	31.2%
	(주)지에이지이 노텍	112	22	-	22	20%	42	-	42	22.7%
연세대 기술지 주	(주)파이디지털 헬스케어	1,000	510	0	510	51%	7,209	3,508	10,717	50%
	코스맥스엔에 스(주)	100	-	-	-	30%	350	120	470	20%
	아이씨엠(주)	500	-	450	450	90%	-	450	450	7%
	(주)보타닉센스	125	-	106	106	20%	-	106	106	18.6%
	이케이엘아이 (주)	100	100	-	100	100%	100	0	100	33.3%

※ 2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중 투자금 많은곳 5개사 선정

현재 일반적인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50, 기술지주회사와 유사한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을 소유할 의무가 있는데, 기술지주회사는 「상법」상 주요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율인 100분의 10 이상만 보유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해당 보유규정의 유예기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래에 관한 법률」은 1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지주회사는 10년으로 두고 있음.¹⁰⁾

그러나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교원창업 기업 등 초기창업기업에 해당하여 투자액회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 대학교 자본금 확보가 일반 기업에 비해 한계가 있는 점 등 일반적인 지주회사, 벤처지주회사 등과 달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10%의 주식 보유비율도 기술지주회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자회사에 대한 외부투자로 기술지주회사의 지분율이 10%보다 낮아짐에 따라 자회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¹¹⁾ 그러나,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커진 상황에서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법 제36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 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2.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재원에 한계가 있는 기술지주회사가 추가로 출자 및 투자를 진행하여 지분을 획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큰 투자액 회수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해 조기에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음.

참고

조기 지분 매각 기술지주회사 사례

- **(서울대)** 유망 AI스타트업에 1억 원 투자, 자회사 지분율을 지킬 수 없어 AI스타트업 지분 모두 처분, 이후 해당 자회사는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에 약2,300억 원에 매각
- **(연세대)** 자회사인 ○○○가 외부투자, R&D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크게 성장시켜 코스닥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자회사 지분율 규정을 지킬 수 없어 지분을 모두 매각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는 관련법령마다 상이한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을 10% 이상으로 통일하는 한편, 후속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회사 의무보유비율을 최초설립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따르면 시장원리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자회사가 운영되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후속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의무보유비율을 최초설립시에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상호를 재량으로 결정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안 제36조의5제1항)

개정안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했던 의무를 재량화하고, 대신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학----- ----- --.. 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1항¹²⁾은 단독 및 공동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 때 단독과 공동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명칭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회사 명칭에 기관의 명칭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 명칭과 상당히 상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일부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10개가 넘는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에 참여함에 따라 현행법과 같이 모든 대학의 명칭을 기술지주회사명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공동형 기술지주회사 현황 >

기술지주 회사명	공동 설립기관	설립 인가일
강원지역 대학연합	①강원대, ②한림대, ③상지대, ④강릉원주대, ⑤가톨릭관동대, ⑥연세대(원주캠퍼스)	2009.4.
전북지역 대학연합	①전북대 ②군산대 ③원광대 ④우석대 ⑤전주대	2011.4.
대경지역 대학연합	①영남대 ②경운대 ③경일대 ④계명대 ⑤금오공과대 ⑥대구대 ⑦대구가톨릭대 ⑧대구한의대 ⑨동국대(경주캠퍼스) ⑩동양대 ⑪안동대	2014.11.
부산지역 대학연합	①동의대 ②부경대 ③동아대 ④동명대 ⑤부산대 ⑥신라대 ⑦인제대 ⑧한국해양대 ⑨동의과학대 ⑩경성대 ⑪동서대 ⑫부산외대 ⑬경남정보대 ⑭부산과학기술대 ⑮부산가톨릭대 ⑯영산대	2015.8.
광주지역 대학연합	①남부대 ②광주대 ③광주여대 ④전남대 ⑤조선대 ⑥호남대	2016.9.
포항연합	①한동대 ②선린대 ③포항대	2017.12.
전남지역 대학연합	①목포대 ②동신대 ③목포해양대 ④순천대 ⑤전남과학대 ⑥전남도립대	2018.9.
엔포유 대학연합	①아주대 ②국민대 ③단국대 ④서울과기대	2016.6.
고려대	①고려대 ②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2009.8.
연세대	①연세대 ②학교법인 연세대학교	2011.4.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공동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관명칭을 표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대신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4)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사유에서 현물 출자비율 유지 제외 (안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8제1항)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중 현물출자 요건과 발행주식 보유 요건을 분리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사유에서 현물출자 요건을 제외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생략)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3. ----- ----- ----- ----- -----현물출자할 것

현행	개정안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신 설> 4. (생략) ③ ~ ⑤ (생략)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생략)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3. (생략) ② (생략)	4.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제36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기술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과 같은 기술을 회사에 내놓는 것을 의미함. 현행법은 기술현물출자 비율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이 되도록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유치 및 가치평가 측면에서 외부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투자유치 측면에서 현행법은 외부에서 투자자금이 유치될 경우 그에 비례하는 기술현물출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기술현물출자 비율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술가치평가액보다 막대한 금

액의 외부투자가 유치되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임.

가치평가 측면에서 현행법은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3항¹³⁾에 따라 기술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¹⁴⁾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함으로써 「상법」상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가치평가는 건당 평균 2,000만원의 비용 및 2.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술지주회사 자본금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당 평가가 기술지주회사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술현물출자 요건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저해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외부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대학의 자체기술 사업화보다 외부회사인수¹⁵⁾를 통한 수익창출방식에 경도될 가능성도 있음.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①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등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안 제36조의2제6항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기관 추가·변경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인가는 설립 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동의·승인함으로써 법률상 효과를 완성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기술지주회사의 구체적인 설립인가 요건과¹⁶⁾ 일반적 입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법 제17)에 비추어 법문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

또한, 개정안은 제36조의2제6항에서 변경인가 절차를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 제36조의4제4항 단서를 삭제하여 대통령령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안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의 마련 및 정비에는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일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이를 주서에 반영함.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 가. 설립목적
 - 나. 출자내역 및 비율
 -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임원의 이력서 1부
-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변경인가 등) ④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항제3호 중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을 “현물출자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학협력단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⑥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의4제4항 본문 중 “자회사”를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의5제1항 중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

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을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8제1항제1호 중 “제36조의2제2항 각 호”를 “제36조의2제2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 · 운영) ① (생략)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 ·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 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 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 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 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 을 <u>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여 보유할 것</u>	3. ----- ----- ----- ----- ----- -- <u>현물출자할 것</u>
<신설>	4. <u>산학협력단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여 보유할 것</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u>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지주</u>

	<u>회사의 분할·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u>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 ③ (생략)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는 <u>자회사의</u>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u>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 ----- ----- ----- ----- <u>자회사</u> <u>설립 시 자회사</u>----- -----. <u><단서 삭제></u>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u>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술지주</u>	① <u>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u>----- ----- -----.

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3. (생 략)

② (생 략)

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

-----.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